

대전천동3구역 5블록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26.09.29)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안샘로14번길7(천동 560) [대전천동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 공급대상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712세대 중 예비입주자 210세대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인)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유 의 사 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29.)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중복청약 불가,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거나 1인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부부(예비신혼부부는 제외)가 각각 청약 신청하는 경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순번을 부여하는 주택으로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계약분만 유효합니다.
- **금회 모집은 신청자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29.) 기준 대전천동3 5BL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지구주민·특별공급·일반공급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신혼부부 계약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6.24.) 및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부적격 당첨자로 그 기간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9.29.(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470**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6.24.), 추가입주자모집공고이후 부적격 당첨,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으로,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6.24.)**를 준용하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고는 **인터넷/모바일 접수만 가능**하며 현장접수가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하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실물건본주택은 없으며, 5블록 공식홈페이지(www.lh-cd.co.kr) 상 사이버건본주택으로 대체하며,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도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리더스시티”이며,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712호)과 분양주택(1,423호)의 혼합 단지입니다.
- **주요일정**

청약접수 (현장접수 불가)	예비입주자 순번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등기우편 제출)	예비자계약
2026.10.14.(수)~10.16(금) 10:00~17:00	2026.10.20.(화) 14:00	~ 2026.10.26.(월) 18:00 까지 * 2026.10.26.(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	별도통보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등기우편주소 : (우34595) 대전시 동구 우암로 250(가양동), 나로프라자 5층 LH 충남남부권주거복지지사 대전천동 서류접수담당자 앞	

- *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하는 분의 신청자격(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금회 공급주택의 예비자 당첨자가 서류제출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2항 4호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3년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 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거나 서류 제출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선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택공급 개요
개 요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 대 조 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분양전환가격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 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유 의 사 항	-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분양전환 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이 유지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대전천동3 5블록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지하3층~지상29층, 5개동 전용면적 60㎡ 이하 712세대 중 예비입주자 210세대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대지 면적 (㎡)	총 세대수	공가호수	잔여 예비자수	금회모집 예비자수	최고 층수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5	합 계									712	60	42	210	
	039.9800A	39A	비확장	39.98	14.1974	2.3577	20.6314	77.1665	21.4416	208	21	-	80	29
	051.8900A	51A	비확장	51.89	17.4875	3.0601	26.7774	99.2150	27.4728	126	16	11	50	28
	051.8900B	51B	비확장	51.89	17.4875	3.0601	26.7774	99.2150	27.4728	28	-	17	-	28
	059.6400B	59B	확장	59.64	21.6821	3.5172	30.7768	115.6161	32.1763	29	2	14	-	29
	059.9800D	59D	확장	59.98	20.7435	3.5372	30.9522	115.2129	31.9569	321	21	-	80	29

- 공가호수 및 잔여 예비자수는 기계약자의 퇴거(해약), 주택 하자발생,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현재 잔여세대의 경우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잔여세대 이외의 예비입주자는 기계약자의 해약에 따른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및 입주 시기는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소멸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예비순번은 LH청약플러스 또는 ARS(1661-7700)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이미 신청한 주택형은 다른 유형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59형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39,51형은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해당단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5.02.28.)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개인별 입주일 아님)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원]

블록	주택형	주택 타입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전환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합계	계약금(20%)	잔금(80%)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5	039.9800A	39A	30,300,000	6,000,000	24,300,000	346,000	(+)49,000,000	79,300,000	141,830
							(-)20,000,000	10,300,000	404,330
	051.8900A	51A	45,700,000	9,100,000	36,600,000	418,000	(+)60,000,000	105,700,000	168,000
							(-)33,000,000	12,700,000	514,250
	051.8900B	51B	45,700,000	9,100,000	36,600,000	418,000	(+)60,000,000	105,700,000	168,000
							(-)33,000,000	12,700,000	514,250
	059.6400B	59B	61,600,000	12,300,000	49,300,000	497,000	(+)71,000,000	132,600,000	201,160
							(-)46,000,000	15,600,000	631,160
	059.9800D	59D	60,800,000	12,100,000	48,700,000	494,000	(+)71,000,000	131,800,000	198,160
							(-)45,000,000	15,800,000	625,250

- 상기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선정된 예비입주자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사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39,51형은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해당 비용을 감안하여 임대조건이 산정되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위의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증액시 전환요율 5%, 감액시 전환요율 3.5%)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주택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블록	주택형	타입	합계	택지비	건축비
5	039.9800A	39A	115,620	41,530	74,090
	051.8900A	51A	146,492	53,212	93,280
	051.8900B	51B	146,492	53,212	93,280
	059.6400B	59B	178,216	62,322	115,894
	059.9800D	59D	176,666	61,897	114,769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60㎡ 이하 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용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3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세대구성원 전원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호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함
•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4. 입주금(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II

신청자격 및 신청기준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29.)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의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참고)
- 주택공급 신청은 **1세대 내 1인 1건**만 가능합니다. (중복청약 불가,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거나 1인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신청 불가)
 -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29.) 기준 대전전동3 5BL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계약자**(지구주민 우선공급 계약자 포함) 및 **그 세대원**(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신혼부부 계약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6.24.) 및 추가입주자모집공고시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부적격 당첨자로 그 기간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금회 모집은 신청자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하는 분의 신청자격(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기 바라며, 금회 공급주택의 예비자 당첨자가 서류제출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개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기간 산정 기준일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는 적용하지 않아 유주택으로 인정됨에 유의

Ⅲ

신청 시 확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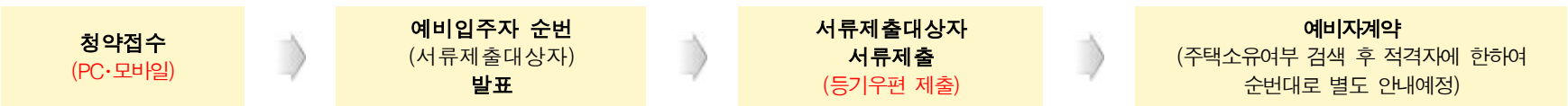
1.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3.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 선정은 우리 공사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최종 예비입주자 순번은 기당첨된 예비자 및 부적격자들로 인해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현재 잔여세대의 경우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잔여세대 이외의 예비입주자는 기계약자의 해약에 따른 공사 발생 상황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및 입주 시기는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소멸됩니다.
- 추후 예비순번에 따라 배정되는 동·호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배정되는 동·호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사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핸드폰 문자 및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예비입주자 공급에 대한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하고 예비입주자 기회 및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인터넷 신청만 가능]

구분	청약접수일	신청방법(인터넷/모바일 신청만 가능)
방법	2026.10.14.(수)~10.16(금) 10:00~17:00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와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고는 인터넷/모바일 접수만 가능하며 현장접수가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하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그 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니,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V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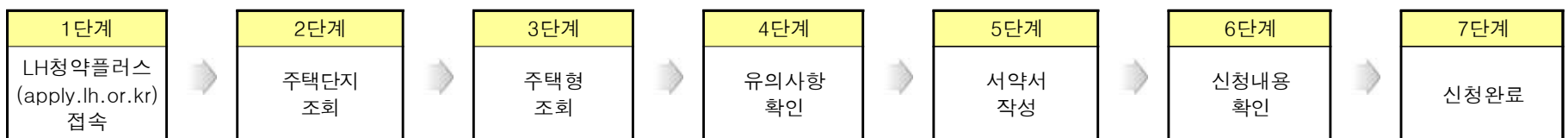
1. PC인터넷·모바일 신청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PC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방법[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준비 → LH 청약플러스 접수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신청완료]



③ 모바일 청약시스템 접속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모바일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에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VI

서류제출 안내

1.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2026.09.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일정 및 장소

예비입주자 순번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등기우편 제출)	계약체결
2026.10.20.(화) 14:00	~ 2026.10.26.(월) 18:00 까지 * 2026.10.26.(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	주택소유여부검색 후 적격자에 한하여 순번대로 별도 안내 예정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등기우편주소 : (우34595) 대전시 동구 우암로 250(가양동), 나로프라자 5층 LH 충남남부권주거복지지사 대전천동 서류접수담당자 앞	

-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09.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서류제출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도달시에는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당첨 취소(예비입주자 지위 상실)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그 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니,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예비입주자 지위 상실)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한 경우 최종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추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부적격자는 적격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최종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핸드폰 문자 및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예비입주자 공급에 대한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하고 예비입주자 기회 및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작성)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주택소유여부 조회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에 게시된 동의서(공사양식) 를 미리 작성 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③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 상세 '로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미혼,이별,사별 등)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분리배우자)
○		⑤ 신분증 사본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⑥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배우자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V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접수처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또는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입주자로 선정된 분)는 동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도 포함)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충남남부권 주거복지지사(대전 동구 우암로 250(가양동), 나로프라자 5층)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고객센터 → 개인정보변경]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감리금액(계약금액 기준)
5	한국토지주택공사 (131-82-13727)	계룡건설산업(주) (314-81-07954) (주)대우건설 (104-81-58180) (주)태영건설 (105-81-74543) 금호건설(주) (104-81-31309)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주)대성종합건축사사무소 (주)건축사사무소광장 (주)펍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동원기술사사무소 (주)건축이엔이	₩ 10,497,550,000 (일백사억구천칠백오십오만 원)

* 감리금액 및 감리회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지구 및 단지 외부 내부 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 일반사항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2.06.24.)** 참고
-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마감자재 목록표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2.06.24.)** 참고

5. 홈페이지 및 문의

사이버 견본주택 [PC•모바일]	서류제출 · 계약체결 장소 및 문의
[PC] www.lh-cd.co.kr [모바일] m.www.lh-cd.co.kr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50, 나로프라자 5층, LH 충남남부권주거복지지사